

■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7. 6.>

안전교육 위탁기관 지정기준(제6조의3제2항 관련)

1. 시설·설비기준

구 분	기 준
교육장	시청각 교육이 가능하고,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일 것
행정실	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일 것
화장실	남녀용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

2. 인력기준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격을 갖춘 후, 해당 분야와 관련한 강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일 것

가. 일반형·수상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: 「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」 제 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·레프팅가이드 자격

나. 수중형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: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수중 관련 단체에서 발급하는 강사·지도자 자격